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조희선 의원이 추진 중인 「광명도사공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7. 6.

광명시의회의회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3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1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chaos96@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7월 6일

발 의 자 : 조희선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공사 설립을 하면서 공청회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었음
- 다수의 광명시민들 및 언론사에서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여서 도시공사설립에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의견이 많음
- 공청회 및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도시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없 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의원 조희선 (2680-2542)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7월 6일

발 의 자 : 오윤배 의원

1.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다.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 등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각종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마.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바. 특정경유자동차 폐차 지원(안 제9조)
- 사. 관계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아.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및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후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과 일일 미세먼지 측정데이터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거창군 및 의정부시 관련 조례안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목식재사업
2.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단계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해당부서의 도로 물청소 실시
3.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PM-2.5)의 경보단계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해당부서의 살수차 동원
4.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5.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환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걱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방진마스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노

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시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입 안 자	의원 오윤배 (2680-2536)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 2017. 6. 3. ~ 2017. 6. 8. (5일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농도가 『별표』의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군민에 대하여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방진마스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노후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6.8. 입법예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목식재사업
2.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단계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해당부서의 도로 물청소 실시
3.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PM-2.5)의 경보단계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해당부서의 살수차 동원
4.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5.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걱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시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년 7월 6일

발 의 자 : 김 정 호 의원

1. 제안이유

- 주민자치 활동을 함에 있어, 열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연령 구성보다 각동 주민센터의 실정에 맞게 인원을 구성하고자 함
- 재위촉시 조례 제20조(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17조(구성등) 제10항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령별 배정기준 폐지(제17조제4항)
- 재위촉 시 심사절차 변경(제17조제10항)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재위촉·공개모집·추천”을 “공개모집·추천”으로 한다.

소 관	평생학습원
입 안	의 원 김 정 호 (02-2680-658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u>④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 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양한 연령 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 배정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u>	<u><삭 제></u>
<u>1. 30대 미만 5명 이내</u>	
<u>2. 30대 이상 ~ 40대 미만 5명 이내</u>	
<u>3. 40대 이상 ~ 50대 미만 5명 이내</u>	
<u>4. 50대 이상 5명 이내</u>	
<u>5. 기 타 5명 이내</u>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u>재위촉 · 공개모집 · 추천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 문은 모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위촉하여야 한다.</u>	⑩ <u>공개모집 · 추천</u> ----- ----- ----- -----.
⑪ · ⑫ (생 략)	⑪ · ⑫ (현행과 같음)